

---

# 2024 외국인 연말정산 매뉴얼

---

본 매뉴얼은 2024.11월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번역상의 이유로 세법 원문과 번역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실무에 직접 적용하시는 경우, 동 한국어 자료를 참고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I . 근로소득 연말정산 .....	1
II . 외국인의 연말정산 .....	2
1. 거주자와 비거주자 .....	2
2. 외국인에 대한 과세특례 .....	4
3.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세법 .....	6
4. 연말정산 세액계산 .....	7
III . 연말정산 계산사례 .....	16
1.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1) .....	16
2.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2) .....	17
IV .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18
V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23

## I . 근로소득 연말정산

### □ 연말정산이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예: '24.1.1~12.31)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 할 최종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초과세액을 환급하고, 반대로 원천징수 된 세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부족한 세액을 추가적으로 징수합니다.
-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말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의 결과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연말정산 시기

- ①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
  -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2월말일)에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 ②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Ⅱ. 외국인의 연말정산

### 1. 거주자와 비거주자

#### □ 거주자 등 개념

-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며,
  -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 납세의무 범위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전세계 소득)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 단기 거주 외국인

- 외국인 거주자 중 해당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부담

## □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 비교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불가)하며, 거주자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다릅니다.

구 분		소득·세액공제 가능 여부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근로소득공제		○	○	
인적 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 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연금보험료 공제		○	○	
특별 소득 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X	
	주택자금공제	○	X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	X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공제	○	X	
	주택마련저축공제	X	X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X	
	신용카드소득공제	○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 공제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	X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	X	
	월세액 세액공제	○	X	
	납세조합세액공제	○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X	
	표준세액공제	○	X	

## 2. 외국인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9% 단일세율)

- (개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특수관계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해 기본세율(6~45%) 대신 19% 단일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세율로 계산 시 적용되는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는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혜택절차)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②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개요)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대하여 소득세를 50% 감면합니다.

\* 감면기간(10년)은 '23.1.1. 당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도 적용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가 '22.12.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그 다음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 (감면대상 기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 ①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② 이공계 등 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 후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혜택절차)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3.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세법

####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한도가 월 20만원(종전 월 10만원) 이하로 상향

#### 2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종전 30만원), 3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종전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소득기준이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종전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으로 상향
- 월세 세액공제 공제한도가 1,000만원(종전 750만원)으로 상향

#### 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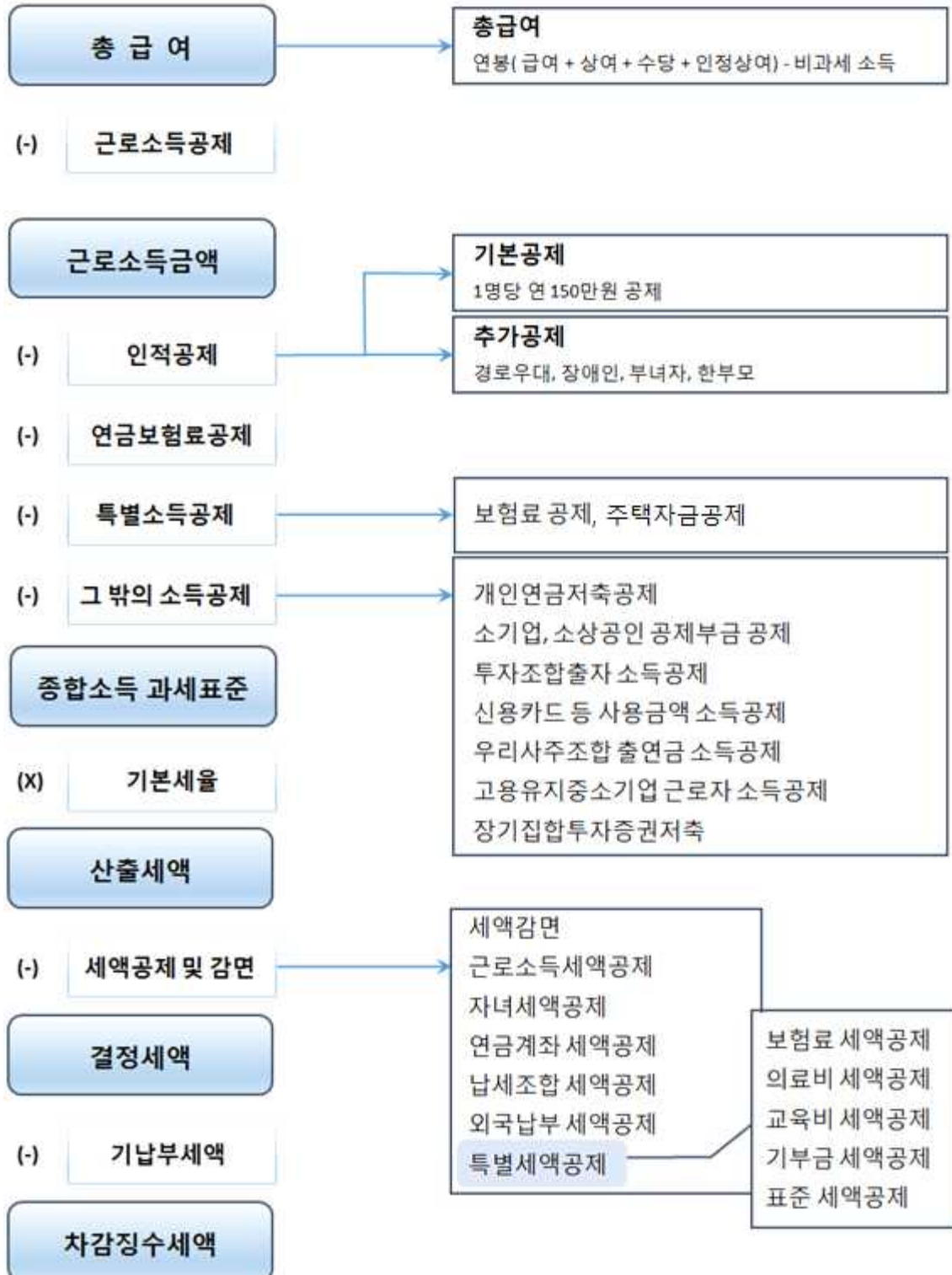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기한이 '26.12.31.(종전 '23.12.31.)으로 연장
-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5 외국인기술자·근로자 특례 배제 요건 보완

-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근로기간 중(종전 과세연도 종료일)으로 확대

## 4. 연말정산 세액계산

###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표



## □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내 용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일용근로소득 제외)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예)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학자금, 식사대,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등												
총급여액	과세대상 근로소득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총급여액</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근로소득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액 × 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0만원 + (4,500 원 초과금액 × 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 원 초과금액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2%)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 원 초과금액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2%)												
※ 공제 한도 : 2,000만원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p>① 기본공제 : 본인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p> <p>○ 나이요건(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직계존속</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직계비속</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형제자매</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위탁아동</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수급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60세이상 (64.12.31.이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세이하 (2004.1.1.이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세이하 60세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한없음</td> </tr> </tbody> </table>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60세이상 (64.12.31.이전)	20세이하 (2004.1.1.이후)	20세이하 60세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제한없음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60세이상 (64.12.31.이전)	20세이하 (2004.1.1.이후)	20세이하 60세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제한없음									
<p>②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공제대상</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경로우대 (70세 이상)</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장애인</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부녀자 (부양/기혼)<sup>1)</sup></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한부모<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제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body> </table>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sup>1)</sup>	한부모 <sup>2)</sup>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sup>1)</sup>	한부모 <sup>2)</sup>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p>1)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p> <p>2)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p> <p>※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적용 불가(중복 시 한부모공제 적용)</p>													

구분	내용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본인 부담금 : 전액공제 보험료공제 : 전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li> </ul>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연 400만원 한도</li> <li>-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600~2,000만원 한도</li> </ul>														
(-) 그 밖의 소득공제	<p>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00.12.31. 이전 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li> </ul> <p>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근로소득금액</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td> <td>500만원</td> </tr> <tr> <td>4천만원 ~ 1억원</td> <td>300만원</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p>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소득공제액</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공제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20년 이후 투자분</td> <td>출자금액의 10% (100%, 70, 30%)*</td> <td>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투자신탁은 300만원</td> </tr> </tbody> </table> <p>*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p> <p>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의 10% 포함)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li> </ul> <p>(신설)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 (공제한도 : 100만원)</li> </ul>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구분	소득공제액	공제한도액	'20년 이후 투자분	출자금액의 10% (100%, 70, 30%)*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투자신탁은 300만원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구분	소득공제액	공제한도액													
'20년 이후 투자분	출자금액의 10% (100%, 70, 30%)*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투자신탁은 300만원													

구분	내용																		
(-) 그 밖의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을 한도로 함.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을 제외하고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li> </ul> </li> <li>⑤ <b>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li> </ul> </li> <li>⑥ <b>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삭감액(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해당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50% 공제(연 1,000만원 한도)</li> </ul> </li> <li>⑦ <b>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연 240만원 한도)</li> </ul> </li> </ul>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p>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p> <p>*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신용카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p>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소득공제 종합 한도 초과액)																		
산출세액	<p>○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과세표준</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기본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원 이하</td> <td>과세표준 × 6%</td> </tr> <tr> <td>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 <td>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td> </tr> <tr> <td>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td> </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 이하</td> <td>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td> </tr> <tr> <td>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td> </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 <td>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구분	내용
(-) 세액감면	<p>① 정부간 협약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해당근로소득금액 상당액을 감면</li> </ul> <p>② 원어민 교사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원어민 교사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동 조항에서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주로 2년) 강의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감면. 다만 체결국가 마다 면세요건은 다르므로 조세조약 개별적 검토 필요</li> <li>- (감면신청) 면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3))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득지급자인 학교에 제출하며, 학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2부를 제출</li> </ul> <p>③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2.12.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은 70%, 이후 2년간은 50% 감면</li> </ul> </li> </ul> <p>④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 90%)감면(연 200만원 한도)</li> <li>- (감면제외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li> <li>- (감면제외업종) 법무·회계·세무관련 등 전문서비스업, 병원 등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등</li> <li>- (감면신청) 근로자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li> </ul>

구분	내용										
(-) 세액공제	<b>① 근로소득세액공제</b> - (세액공제금액)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시 (71만 5천원 + 초과금액의 30%) - (공제 한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총급여</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세액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3,300만원 이하</td> <td>74만원</td> </tr> <tr> <td>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td> <td>MAX(①, ②) ① 74만원- 【(총급여액-3천3백만원) × 0.008】 ② 66만원</td> </tr> <tr> <td>7,000만원 초과</td> <td>MAX(①, ②) ① 66만원- 【(총급여액-7천만원) × 1/2】 ② 50만원</td> </tr> <tr> <td>1억 2천만원 초과</td> <td>MAX(①, ②) ① 50만원- 【(총급여액-1억 2천만원) × 1/2】 ② 20만원</td> </tr> </tbody> </table>	총급여	세액공제금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 ②) ① 74만원- 【(총급여액-3천3백만원) × 0.008】 ② 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 ②) ① 66만원- 【(총급여액-7천만원) × 1/2】 ② 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MAX(①, ②) ① 50만원- 【(총급여액-1억 2천만원) × 1/2】 ② 20만원
	총급여	세액공제금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 ②) ① 74만원- 【(총급여액-3천3백만원) × 0.008】 ② 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 ②) ① 66만원- 【(총급여액-7천만원) × 1/2】 ② 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MAX(①, ②) ① 50만원- 【(총급여액-1억 2천만원) × 1/2】 ② 20만원									
	<b>② 자녀세액공제</b> - (기본공제대상자녀) 8세 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은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3명 : 65만원, 4명 : 95만원, 5명 : 125만원 ) - (출산·입양 자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산출세액에서 공제										
	<b>③ 연금계좌 세액공제</b>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 (공제한도 및 공제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45백만원(55백만원) 이하</td> <td>600만원</td> <td>15%</td> </tr> <tr> <td>45백만원(55백만원) 초과</td> <td>(900만원)</td> <td>12%</td> </tr> </tbody> </table>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백만원(55백만원) 이하	600만원	15%	45백만원(55백만원) 초과	(900만원)	12%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백만원(55백만원) 이하	600만원	15%									
45백만원(55백만원) 초과	(900만원)	12%									
<b>④ 납세조합세액공제</b> -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 공제											
<b>⑤ 외국납부세액</b>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발생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 - 감면대상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구분	내용
----	----

(-) 세액공제

**⑥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⑦ 보험료 세액공제**

- 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 납입액의 12%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납입액의 15%(연 100만원 한도)

**⑧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 항목) 의료비·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 총급여의 3% 초과분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공제대상자	공제한도	공제율
㉠ 본인·장애인·만65세 이상자, 난임수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한도없음	15% (난임수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⑨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15% 공제

공제대상자	공제항목	공제한도
①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상환액 등	전 액
②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300만원
③ 초·중·고등학생	등록금·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 50만원)	1명당 300만원
④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900만원
⑤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 액

구분	내용																		
(-) 세액공제	<p><b>⑩ 기부금 세액공제</b></p> <p>-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 한도내의 기부금의 15% 공제 (1천만원 초과분은 30%)</p> <p>※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하여 공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48 629 678 707">기부금 종류</th> <th data-bbox="678 629 1082 707">공제한도</th> <th data-bbox="1082 629 1410 707">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48 707 678 817">① 정치자금 기부금</td> <td data-bbox="678 707 1082 817">【근로소득금액】 ×100%</td> <td data-bbox="1082 707 1410 817">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td> </tr> <tr> <td data-bbox="448 817 678 916">② 고향사랑 기부금</td> <td data-bbox="678 817 1082 916">【근로소득금액 -①】 ×100% (연간 한도 500만원)</td> <td data-bbox="1082 817 1410 916">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100</td> </tr> <tr> <td data-bbox="448 916 678 1048">③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td> <td data-bbox="678 916 1082 1048">【근로소득금액-①-②】 ×100%</td> <td data-bbox="1082 916 1410 1048"></td> </tr> <tr> <td data-bbox="448 1048 678 1146">④ 우리사주 조합기부금</td> <td data-bbox="678 1048 1082 1146">【근로소득금액-①-②-③】 ×30%</td> <td data-bbox="1082 1048 1410 1146" rowspan="3">「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td> </tr> <tr> <td data-bbox="448 1146 678 1364">⑤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교단체)</td> <td data-bbox="678 1146 1082 1364">【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 ×10% +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td> </tr> <tr> <td data-bbox="448 1364 678 1536">⑥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교단체 외)</td> <td data-bbox="678 1364 1082 1536">【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 ×30%</td> </tr> </tbody> </table>	기부금 종류	공제한도	공제율	①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0%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고향사랑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①】 ×100% (연간 한도 500만원)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100	③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 ×100%		④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③】 ×30%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⑤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 ×10% +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⑥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교단체 외)
기부금 종류	공제한도	공제율																	
①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0%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고향사랑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①】 ×100% (연간 한도 500만원)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100																	
③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 ×100%																		
④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③】 ×30%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⑤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 ×10% +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⑥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 ×30%																		
결정세액	<p>(=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p> <p>※ 외국인근로자 중 단일세율 적용신청자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 19%</p>																		
(-) 기납부세액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p>(=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p> <p>※ 결정세액 &gt;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lt;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p>																		

※ 본 세액계산표는 관련 세법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어 공제감면 적용을 위한 필요 요건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매뉴얼을 참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법령 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로부터 공제 적용을 위한 추가요건 및 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Ⅲ. 연말정산 계산 사례

#### 사례 1.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1)

##### □ 기본사항

- James는 2024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음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비과세 소득 ₩5,000,000 포함)
- 가족사항 : 본인(James, 만 36세), 부인(Jane, 만 38세)
  - ☞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자임
- 지출내역 : 국민연금 ₩2,500,000,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 기납부세액 ₩44,334,000

연말정산 방법		19% 단일세율 방법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비과세근로소득	(-) 5,000,000		
<b>총급여액</b>	<b>₩195,000,000</b>		
근로소득공제	16,650,000		
<b>근로소득금액</b>	<b>₩ 178,350,000</b>		
인적공제			
- 기본공제	3,000,000		
연금보험료공제	2,500,000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그밖의 소득공제			
<b>과세표준</b>	<b>₩ 171,350,000</b>		
<b>산출세액(기본세율)</b>	<b>₩ 45,173,000</b>		
근로소득세액공제	200,000		
<b>결정세액</b>	<b>₩ 44,973,000</b>	<b>결정세액</b>	<b>₩ 38,000,000</b>
기납부세액	(-) 44,334,000	기납부세액	(-) 44,334,000
<b>차감징수세액</b>	<b>₩ 639,000</b>	<b>차감징수세액</b>	<b>₩ △6,334,000</b>

## 사례 2.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2)

### □ 기본사항

- James는 2024년도에 ABC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함
  - 월급여 ₩3,500,000(회사에서 월세보전으로 지급한 ₩500,000 포함)
- 가족사항 : 본인(만 40세), 부인(만 35세), 아들(만 8세), 아버지(만 71세)
  - James와 그의 가족들은 함께 살고 있으며 가족들은 모두 연간 소득 금액이 ₩1,000,000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 지출내역 : 생명보험 ₩1,100,000, 국민연금 ₩1,200,000, 자녀교육비 ₩4,800,000(국내교육기관 지급 분)
- 월별 원천징수 세액 ₩36,690(단일세율 선택하지 않음)

연말정산 방법		항목 설명
연간근로소득	₩42,000,000	① 회사에서 월세보전 목적으로 지급한 ₩500,000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근로소득①	(-) 0	
총급여액	₩42,000,000	② $7,500,000 + (42,000,000 - 15,000,000) \times 15\%$
근로소득공제②	11,550,000	
근로소득금액	₩ 30,450,000	
인적공제		
- 기본공제③	6,000,000	③ (4명 × 1,500,000)
- 추가공제④	1,000,000	④ (1명 × 1,000,000), 경로우대
연금보험료공제	1,200,000	
특별소득공제	0	
과세표준	₩ 22,250,000	
산출세액(기본세율)	2,077,500	⑤ (공제액) : min(①, ②)
근로소득세액공제⑤	660,000	① $715,000 + (2,077,500 - 1,300,000) \times 30\%$ ② (공제 한도) : max(①, ②) ① $740,000 - [(42,000,000 - 33,000,000) \times 0.8\%]$ ② ₩660,000
자녀세액공제	150,000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⑥	120,000	⑥ $1,000,000 \times 12\%$
- 교육비⑦	450,000	⑦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 $\min(\text{₩}4,800,000, \text{₩}3,000,000) \times 15\%$
결정세액	₩ 697,500	
기납부세액⑧	(-) 440,280	⑧ $36,690 \times 12$ 개월
차감징수세액	₩ 257,220	납부할 세액

## IV.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Q&A)

1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월별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등 소득공제 사항의 일부를 고려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한 표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총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각종 공제사항을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동법 제137조

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137조

3

저는 급여를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지만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납세자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납세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이때 납세자는 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150조

4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5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6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 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7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8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9

2023년도 12월의 보험료를 2024년 1월에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는 어느 연도에서 공제되는지요?

-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발생한 공제가 가능하므로 2024년 1월에 납부한 경우 2024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10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11

가족명의로 카드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 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12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 미국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법령: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13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그 후에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14

연말정산이 환급일 경우에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한 때에는 고용주(근무처)를 통해서 환급 받을 수 있고 환급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15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일부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누락되어 추가로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3조

16

연도 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 대신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 연말정산세액 계산 결과 발생한 근로자의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세액 계산 결과 발생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청구권이 발생되어 환급금은 체불임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 해고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V.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로,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ometax.go.kr>

나.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홈택스 첫 화면 상단의 [로그인]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클릭
- 인증서 선택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확인] 클릭

\*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도 로그인 가능, 비회원로그인(공인인증서)도 가능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상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은행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

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출력하기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표시
-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사용)금액이 조회되며, 지출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월별 지출(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조회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클릭 한 번(One Click)’으로 출력됩니다.

※ 월별(일자별) 지출(사용)금액을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괄출력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외국인등록번호로만 수집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보험가입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아닌 여권번호 또는 임시번호 등으로 가입한 경우 지출한 보험비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3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전자파일 제출

국세청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종이문서 출력·제출·보관에 따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이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전에 전자문서 자료추출 프로그램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방문해서 ‘자료추출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설치해야 합니다.

#### 가.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다운로드하기

-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
- 조회방법은 [2.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와 동일하며, 조회 후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PDF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하여 전자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PDF다운로드 시 문서의 비밀번호(임의의 7자리로 설정가능) 설정여부 선택 가능

※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항목명.PDF”의 형태로 제공되며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가능

#### 나. 다운로드한 전자문서 활용하기(Paperless 연말정산)

- 근로자는 다운로드한 전자문서를 소속 회사에 제출합니다.
  - “종이 없는 연말정산”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다운로드한 전자문서를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소득·세액공제증명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프로그램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자동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가.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 공인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만 19세 미만(2005.1.1.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클릭
  - \*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환급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상당·불복·고충 제보·기타	세무 납세
<b>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b>	·제도 안내 ·신청확인(취소)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증빙서류 제출 ·소득자료 확인 ·승용차 가액 조회		·신청하기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심사 진행상황 조회		·직접입력 신청 ·계산해보기 ·정기 신청 취하	
<b>근로장려금 반기 신청</b>	·제도 안내 ·신청확인(취소)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증빙서류 제출 ·반기 소득자료 확인 ·승용차 가액 조회		·신청하기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반기 심사 진행 조회		·직접입력 신청 ·계산해보기 ·반기 신청 취하	
<b>연말정산간소화</b>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b>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b>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진행상황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	·사업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①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공인인증서, 핸드폰, 신용카드)을 이용하여 동의 신청하기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신청」 클릭 → 4. 신청에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5. 사용자인증 선택에서 본인인증 수단(간편인증,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 선택 → 본인 인증하여 신청

② 온라인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1. ~ 2. 동일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온라인신청」 클릭 → 4.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다음] 클릭 → 5. [첨부서류 대상 파일 선택]에서 신분증 사본의 [파일찾기] 클릭 → 6. 신분증 사본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클릭 → 7. [첨부서류 제출하기] 클릭

\*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 자료 조회자가 로그인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첨부 필요

③ 팩스를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1. 동일 클릭 →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클릭 3. 「팩스신청」 클릭 → 4.[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클릭 → 5. 출력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전송(☎1544-7020)

2) 모바일을 이용한 제공동의 신청 방법

제공자가 로그인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제공자와 조회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수단(인증서, 휴대전화)을 이용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1. 홈택스앱 실행하여 로그인 →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 3. [연말정산간소화] 선택 → 4. [제공동의 신청/취소] 선택 → 5. [제공동의 신청] 선택 → 6. 자료제공자 정보 입력 → 7. 본인인증방법(휴대전화 인증, 인증서 인증) 선택 → 8. 본인 인증 → 9. 자료조회자 정보 입력 → 10. [다음] 선택

상기 1. ~10. 동일 → 11. [파일제출 신청] 선택 → 12. [첨부] 선택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선택 → 13. [증빙서류 제출] 선택

### 3)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세무서 방문 신청」 클릭 → 4. [서식다운로드] 클릭

## 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현황조회 및 취소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현황 조회]를 클릭하거나 모바일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선택하여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외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 조회 가능, 정상적으로 자료 제공동의 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부양가족 동의현황 조회] 중 「동의 취소」에서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가능